

인권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소고(小考)*

박 병 도**

차 례

- I. 들어가며
- II.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그 필요성
- III.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유형
- IV.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 V. 맺는 말: 인권적 접근의 한계와 전망

【국문초록】

오늘날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인권과 환경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먼저 인권은 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것은 인권 청구를 통한 환경보호의 간접적인 이행을 의미한다. 거꾸로 인간은 자신의 기본적 인권을 누리는데 있어서 깨끗하고 건강한 알맞은 환경에 의존한다. 환경악화는 인권 실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기, 수질 및 토지의 오염을 포함한 환경 악화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등과 같은 특정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권과 환경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론적인 문제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한다.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것을 설명하는 세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다. 첫 번째 접근법은 인권이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고 제시한다. 이 접근법은 적절한 수준의 환경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을 사용할 가능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접근법은 환경이 인권의 향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가정한다. 세 번째 접근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하에 인권과 환경의 통합을 제안한다.

환경보호와 인권 간의 관계의 프리즘은 시너지 효과이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접근법의 공통점은 환경과 인권 간의 관계를 시너지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 이 논문은 2018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것이다. 환경보호와 인권실현은 상호 보강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에서 나타나는 이론 3가지, 즉 확대이론(expansion theory, 또는 재해석이론), 환경민주주의이론(environmental democracy theory), 창설이론(genesis theory)을 살펴본다. 그리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유럽인권협약을 적용하여 판결한 유럽인권 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인권을 동원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결론 부분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한계와 전망을 기술하였다.

I. 들어가며

지금 우리는 지구온난화, 대기 및 수질 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삼림파괴, 사막화 등 무시무시한 환경문제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전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과잉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다수의 국제환경 조약 및 선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환경법과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의 파괴를 막아 어느 정도 원상태로 되돌려 놓았는지, 그리고 환경오염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인간, 특히 한계상황에 있거나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는 국가나 개인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존재한다.¹⁾

오염(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의 감소, 삼림파괴, 사막화, 자연재난(이상기후, 해일, 화산 폭발, 지진, 가뭄, 홍수 등) 등 환경악화(environmental degradation)의 형태는 다양하다. 이러한 복잡한 전지구적 환경악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단일의 방법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를 더 무겁고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환경악화는 불가피하게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권의 향유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행복추구도 손상시키거나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인권에 대한 환경악화의 영향은 분명히 주요한 관심사이고 또한 동시에 환경관련 법과 정책에도 인권 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추세도 뚜렷하다. 다만 환경법

¹⁾ Linda Hajjar Leib,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Philosophical, Theoretical and Legal Perspectiv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p.1.

의 1차적 목표가 환경 관련 활동의 규제인 반면에, 인권제도는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뿐만 아니라 거꾸로 환경악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데 필요한 기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²⁾

오늘날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인권과 환경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먼저 인권은 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것은 인권 청구를 통한 환경보호의 간접적인 이행을 의미한다. 거꾸로 인간은 자신의 기본적 인권을 누리는데 있어서 깨끗하고 건강한 알맞은 환경에 의존한다.³⁾ 인권의 완전한 존중·실현을 위한 조건 중의 하나는 인간의 건강과 생활수준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건강한 환경이다. 예를 들면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은 인간의 건강 또는 심지어 생명과 수명에 대단히 파괴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환경악화는 다양한 인권을 위협한다. 다시 말해서 환경악화는 국제인권법에서 폭넓게 보호되고 있는 다양한 인권들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악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인권의 실효적이고 형평한 실현을 위해서는 깨끗하고 건강한 좋은 환경이 필수적이다.

이 논문은 인권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여기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관련한 담론도 포함한다. 즉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적용가능한 인권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는 환경법 및 정책에 인권기준을 통합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다. 또한 환경악화가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인권의 실현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 의존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인권적 접근’ 개념에 대한 오해 내지는 혼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환경문제(또는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human rights approach to environmental issues(environmental protection))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인권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있는 방안(또는 인권실현을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관점 내지는 담론이다. 인권적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해석하는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환경과 인권의 관계를 다루고

²⁾ *Ibid.*, p.2.

³⁾ Case concerning the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ICJ Reports(1997), Separate Opinion of Judge Weeramantry.

있는 대부분의 문헌은 ‘환경이 어떻게 인권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권적 접근에서 같이 다루고 있거나 특별히 양자를 구별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 않다. 인권적 접근에 대한 오해 내지는 혼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과 환경간의 관계, 또는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에 관한 애초 논의는 이미 확립된 인권기준을 통해서 환경보호에 기여하거나 환경과 관련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보호 또는 어떤 조건의 환경이 인권 실현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경우, 또는 환경보호가 인권존중에 기여하는 경우를 탐색하는 방법도 이른바 ‘인권적 접근’에서 포섭하여 관련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II.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그 필요성

1.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1968년 UN총회는 처음으로 환경의 질과 기본적 인권의 향유 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⁴⁾ 즉 UN총회는 환경변화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선언’은 원칙15)에서 “인간은 존엄과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 평등 및 충분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 있다”라고 천명하고, 좋은(decent) 환경은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누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UNCHE 이후 인권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유엔현장인권기구와 인권조약기구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⁶⁾

4) UN GA Res. 2398(XIII), UN Doc. A/L 553/Add. 1-4(3 December 1968).

5) 인권과 환경보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뿌리는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선언’이다. 동선언 원칙1은 “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환경 속에서(in an environment of a quality that permits a life of dignity and well-being) 자유, 평등과 적절한 수준의 생활조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the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equality and adequate conditions of life)를 가지며, 현재 및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Gudmundur Alfredss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n David Leary and Balakrishna Pisupati (eds.), *The Futur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10, p.138)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인권과 환경에 관한 결의(16/117)에 의해 작성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⁸)의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적 연구’(2011)⁹에서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의 ‘성질’(nature)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다.¹⁰¹¹ 이러한 세 가지 접근법은 서로 공존할 수 있으며 다른 접근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이러한 세 가지 접근법의 공통점은 환경과 인권 간의 관계를 갈등이 아닌 시너지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첫 번째 접근법은 인권이 실질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고 본다. 인권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적절한 수준의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을 사용할 가능성을 강조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인권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¹² 일정한 수준의 환경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 6)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인권과 환경’과 관련한 결의를 2011년(A/HRC/RES/16/11), 2012년(A/HRC/RES/19/10), 2014년(A/HRC/RES/25/21), 2015년(A/HRC/RES/28/11), 2016년(A/HRC/RES/31/8), 2017년(A/HRC/RES/34/20), 2018년(A/HRC/RES/37/8)에 채택한 바가 있다.
- 7) A/HRC/RES/16/11(12 April 2011).
<https://documents-dds-ny.un.org/doc/RESOLUTION/GEN/G11/126/85/PDF/G1112685.pdf?OpenElement>(2019년 7월 27일 최종 검색)
- 8)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에 속한 조직의 하나로 세계 각국의 인권 보호와 인권 교육 홍보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실’이라고도 한다. 1993년 12월 20일 UN총회의 결의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조직의 최고위직은 유엔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로 UN 내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활동을 총괄한다. 초대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에쿠아도르 출신의 Ayala Lasso(1994-1997), 제2대는 아일랜드 출신의 Mary Robinson(1997-2002), 제3대는 브라질 출신의 Sergio Vieira de Mello(그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폭탄테러로 순직하였음, 그래서, 가이아나 출신의 Bertrand Ramcharan이 대행), 4대는 캐나다 출신인 Louise Arbour, 5대는 남아공 출신 Pillay(2008-2014)이었고, 제6대는 요르단 출신의 Zeid Raad Al Hussein(2014-2018)이었고, 현재는 칠레 출신의 Michelle Bachelet Jeria(2018-현재)가 활동하고 있다. <https://www.ohchr.org/EN/AboutUs/Pages/HighCommissioner.aspx>(2019년 7월 23일 최종 검색)
- 9) UNHRC, *Analyt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 Doc. A/HRC/19/34 (16 December 2011)(이하 ‘OHCHR Report(2011)’라 함)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19/A-HRC-19-34_en.pdf(2019년 7월 27일 최종 검색)
- 10) OHCHR Report(2011), paras.7-9.
- 11) OHCHR Report(2011)에는 유엔인권이사회와 그 전신인 그 전신인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그리고 인권조약기구들의 인권과 환경에 관한 논의 과정 및 그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OHCHR Report(2011), paras.41-63 참조).

법적 수단으로서 인권을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절차적 관점에서 볼 때,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공공 문제에 대한 참여 및 사법 접근(access to justice) 등과 같은 권리는 국가사회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력구조를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사항들이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접근법은 특정한 권리(예, 생명권, 건강권, 사생활 및 가정생활에 대한 권리 등)의 환경적 차원을 강조한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환경문제(또는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더 자세히 살펴본다.

첫 번째 접근법은 환경보호를 위해 인권이 도구로 동원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바탕에 두고 있다.¹³⁾ 1) 인권담지자는 수 없이 많지만, 특정 사안에서 누가 구체적으로 권리보유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에 ‘환경보호’ 영역에서는 누가 권리보유자인지 확실하게 식별하기가 어렵다. 2) 구체적으로 확인된 권리보유자는 사법적 기구(예, 국제인권재판소) 또는 준사법적 기구(예, 국제인권기구) 등에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청구는 국제환경법에서 이용 가능한 것 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되어 있다. 3) 적어도 당분간은 여전히, 인권이 환경보호 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며, 그 결과 인권은 순수한 환경적 고려보다 더 강한 사회적 정치적 견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보호가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보호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환경보호 수준은 실제 제한적이다. 특히 환경악화는 그러한 악화와 인권의 중대한 침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었을 경우에만 인권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과관계가 부재하거나 희박한 경우, 인권이라는 도구는 환경보호에 거의 쓸모가 없게 된다.

이러한 결점을 해결하면서 환경과 관련한 인권을 통하여 환경보호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인권의무를 분류화하는 작업도 시도되었다. 모든 인권은 의무담지자(주로 국가)에게 세 가지 유형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입론이 이루어지고 실제 국제관행으로 확립되고 있다. 첫째 유형은 인권을 존중할 의무(obligation to respect)이고, 두 번째는 제3자(예, 개인, 비국가행위자, 다국적

¹²⁾ Donald K. Anton and Dinah L. Shelt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Human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130.

¹³⁾ Pierre-Marie Dupuy and Jorge E. Viñual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357.

기업 등)에 의한 침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의무(obligation to protect), 셋째,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점차적으로 실현할 의무(obligation to fulfil)이다.¹⁴⁾

환경과 관련한 인권을 통하여 환경보호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인권의 분류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절차적 권리와 실체적 권리로 나눈다.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절차적 환경인권의 발전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UNECE의 주도로 1998년 채택된 Aarhus협약¹⁵⁾은 환경문제에 대한 공공의 참여권, 환경정보 및 사법에 대한 접근권 등 주요한 절차적 환경인권을 잘 반영하고 있다.¹⁶⁾

또 다른 분류화는 전통적 인권과 새로운 인권과 관련이 있다. 단지 환경보호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통적 인권(일반적 인권)과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물에 대한 권리, 환경정보에 대한 권리,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공공의 참여권, 사법접근권 등과 같은 새로운 권리(특별한 환경적 권리)로 구별할 수 있다. 일반적 권리는 환경을 보호하려는 특별한 목적으로 형성된 권리가 아니다.¹⁷⁾ 생명권, 건강권, 식량권,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또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등이 일반적 권리 해당한다. 이러한 권리의 환경적 차원의 해석은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이후에 진보적 해석을 통해서 소개되고 전파되었으며, 새로운 환경적 요소와 결합하여 계속하여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지역적 인권재판소(예,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 아프리카인권재판소), 그리고 유엔 인권기구(예, 주요한 인권조약 이행감독기구들, 유엔인권이사회) 및 지역적 인권기구(예, 유럽인권위원회, 미주인권위원회, 아프리카인권

14) *Ibid.*, pp.363-364.

15)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1998년 6월 25일 채택, 2001년 10월 30일 발효. 2019년 7월 현재 당사국은 47개국(46개 국가와 EU)이다.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IND&mtdsg_no=XXVII-13&chapter=27&clang=_en(2019년 7월 23일 최종 검색)

16) 정보접근권, 의사결정참여권, 사법접근권 등과 같은 절차적 인권은 환경목표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Ellen Hey, *Advanced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ELgar, 2016, p.124).

17) 일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권조약인 유럽인권협약(1950), 국제인권규약(1966), 미주인권협약(1969)은 환경문제를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한 스톡홀름선언이 채택된 1972년 이전에 채택되었다.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¹⁸⁾

두 번째 접근법은 환경이 인권의 향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가정한다. 이 접근법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의 보장은 건강한 환경을 바탕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권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접근법은 환경보호가 인권 존중에 기여하는 도구적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¹⁹⁾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대기, 수질 및 토지의 오염을 포함한 환경악화는 인권의 실현에 위협이 된다. 환경의 질은 인권 실현의 조건이다. 따라서 환경보호는 인권의 향유를 위해 필수적이다. ‘좋은’(decent) 환경은 인권의 실효적이고 형평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 환경악화는 광범위하게 인권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안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²⁰⁾

세 번째 접근법은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 하에 인권과 환경의 통합을 제안한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사회적 목표가 통합된 방식으로 다루어 져야하고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정의 문제의 통합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 접근법은 세 가지 접근법 중 가장 불분명하며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된다.²¹⁾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세 가지 기둥, 즉, 환경보호, 경제발전, 인권(사회발전), 다시 말해서 국제환경법, 국제경제법, 국제인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²²⁾ 이러한 구조는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통합적이고 상호작용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²³⁾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인권, 환경, 경제적 요소가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이 세 가지 요소 간에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세 기둥이 어떻게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주어진 과제이다.²⁴⁾

18) Pierre-Marie Dupuy and Jorge E. Viñuales, *op. cit.*, p.366.

19) *Ibid.*, p.357.

20) OHCHR Report(2011), paras.15-22.

21) Pierre-Marie Dupuy and Jorge E. Viñuales, *op. cit.*, p.359.

22) 박병도,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의 통합적 구조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3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1998, 83면.

23) Dominic McGoldrick,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45, 1996, pp.796-797.

24) Pierre-Marie Dupuy and Jorge E. Viñuales, *op. cit.*, p.359.

2. 환경보호와 인권 간의 시너지 관계

환경보호와 인권 간의 관계의 프리즘은 시너지 효과이다.²⁵⁾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접근법의 공통점은 환경과 인권 간의 관계를 시너지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환경보호와 인권실현은 상호 보강하는 효과가 있다.²⁶⁾ 인권과 환경보호 간의 시너지 관계는 새로운 국제문서의 채택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과정에서 국제관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²⁷⁾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보호와 인권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는 1)환경은 인권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거꾸로 2)인권은 환경보호를 위한 도구로서 작동할 수 있는가? 이를 긍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역할을 하는가?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쟁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NGO활동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면, 특정한 질의 환경에 대한 권리, 기후변화와 인권 간의 관계 등의 문제가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특징 중의 하나는, 그 동안의 논쟁에서는 주로 양자 간의 ‘시너지’에 관심을 두었고, 인권과 환경보호 간의 ‘갈등’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OHCHR의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적 연구’(2011)에서도 양자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자연보존은 때론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과 자원의 이용문제와 충돌한다. 또한 환경목표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연보존과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권리 사이의 긴장을 생각해 보라. 야생생물의 보전, 자연자

²⁵⁾ *Ibid.*, p.357.

²⁶⁾ 2019년 3월 12일 유엔환경총회(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에서 현재 ‘인권과 환경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인 David Boyd는 “인권의 완전한 실현은 건강한 환경에 의존하고 환경의 보호는 정보접근권, 참여권,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인권의 행사에 달려 있다”(the full enjoyment of many human rights depend on a healthy environment and that protecting the environment depends on the exercise of human rights, such as access to information, particip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고 발언하였다.
<http://web.unep.org/environmentassembly/un-special-rapporteur-human-rights-and-environment>(2019년 7월 23일 최종 검색).

²⁷⁾ 1972년 스톡홀름선언 원칙1도 인권과 환경 간의 시너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ierre-Marie Dupuy and Jorge E. Viñuales, *op. cit.*, p.358).

원개발의 규제 등은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경제 개발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환경규제는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²⁸⁾

양자 간에는 갈등도 있지만 시너지 관점이 국제인권법과 국제환경법의 형성이 나 이행 과정에서 국제관행으로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다. 그리하여 양자 간의 시너지 관계를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3. 연계의 필요성

인권과 환경보호 간의 연계는 다음 세 가지 이유와 관련이 있다.²⁹⁾ 이것은 양자 간의 연계의 이점 또는 유용성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권과 환경과의 연계는 국가가 환경악화로 인한 인권침해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존의 국제적 인권 기준 및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OHCHR은 보편적인 정례검토(UPR) 과정에서 환경악화가 국제인권법에 따라 인권 의무를 준수하는 국가의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도록 각 국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UNHRC의 특별 절차³⁰⁾는 기본적 인권의 이행에 대한 환경악화의 영향을 다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량권에 대한 특별 보고관³¹⁾은 UNHRC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서 환경악화, 사막화 및 기후변화를 빈곤에

28) Alan Boyl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Other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 in Bodansky, Daniel, Jutta Brunne and Ellen Hey(eds.),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141.

29) Marcos A. Orellana,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Climate Change," in José Parra(ed.),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A Field of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Geneva: Cifedhop, 2012, pp. 58-61.에서 논리를 추출함.

30) UNHRC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주제별 위임사항을 다루는 절차(thematic mandates)와 국가별 위임사항을 다루는 절차(country-specific mandates)가 그것이다. 현재 44개 주제별 위임사항절차와 12개국 국가별 위임사항절차가 설치되어 있다.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Pages/SpecialProcedures.aspx>(2019년 7월 27일 최종 검색).

31) 식량권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은 2000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결의(2000/10)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 특별보고관은 농업 관련 산업, 환경악화 및 인권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https://www.ohchr.org/EN/Issues/Food/Pages/FoodIndex.aspx> 2019년 7월 27일 최종 검색)

기여하는 요소로 언급하면서 환경악화가 식량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루었다.³²⁾ 또한 인권과 환경 간의 연계는 의무담지자(duty bearers)가 기존의 인권 기구 및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환경악화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동안 유엔인권기구에서 다른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인권과 환경과의 연계는 인권에 미치는 환경악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한다. 주로 환경오염은 국경을 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때 발생하는 피해를 다루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국제협력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완전한 인권 실현 및 보호를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환경악화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 불균형적으로 더 큰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즉 환경악화는 환경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와 결합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원주민과 부족민은 일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환경오염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불균형적으로 발생한다.

셋째, 인권과 환경 간의 연계는 국가들로 하여금 원주민(indigenous)과 부족민(tribal peoples)과 같은 취약 집단이 처한 환경위험을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취약 집단은 그들의 생계가 자연환경과 불가분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악화로부터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의 Saramaka사건³³⁾과 아프리카인권위원회의 Ogoniland사건³⁴⁾에서도 명백하게 인정된 바와 같이 환경파괴는 물, 식량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32) 식량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이외에도 원주민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실향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안전한 식수에 대한 인권 및 위생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도 인권과 환경 연계를 명확히 하고 강화시키는데 기여했다. OHCHR Report(2011), paras.51-54.

33) Case of the Saramaka People v. Surinam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Judgment of November 28, 2007(Preliminary Objections, Merits, Reparations, Costs, Ser. C, No. 172) (이하 Saramaka 사건으로 약칭함) http://www.corteidh.or.cr/docs/casos/articulos/seriec_172_ing.pdf (2019년 7월 3일 최종 검색).

34) Decision Regarding Communication 155/96(Social and Economic Rights Action Center and the 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v. Nigeria, Case No. ACHPR/COMM/A044/1, 27 October 2001(이하 Ogoniland 사건으로 약칭함)(<http://www.achpr.org/communications/decision/155.96/>), 2019년 7월 3일 최종 검색).

토지 및 생계 수단에 확실히 영향을 미친다. 리우선언의 원칙²²는 그들의 지식과 전통적 관습으로 인해 원주민과 그들의 공동체가 환경 관리 및 개발에서 담당할 특별한 역할을 인정한다. 의무담지자는 취약 집단의 인권의 실효적이고 공평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파괴가 이러한 취약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공개는 환경오염의 예방 및 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 따라서 인권과 환경 간의 연계는 취약 집단에 대한 환경파괴로 인한 악화를 인식하고 의무담지자가 이들 인권의 실효적이고 공평한 실현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권제도가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을 얻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는 것도 인권과 환경보호 간의 연계 논의에서 중요하다. 일부의 인권은 특별한 환경피해의 경우에 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³⁵⁾ 그리고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이 인권의 이행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의한 유럽인권협약(ECHR)³⁶⁾의 적용을 통한 사례들과 앞에서 소개한 미주인권재판소에 의한 자신들의 토지를 보호할 수 있는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한 *Saramaka*사건, 아프리카인권위원회의 *Ogoniland*사건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적 관심을 인권 영역에 통합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³⁷⁾

첫째, 인권영역은 인권과 생태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 민족 및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유한 메커니즘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인권 전통에서 환경적 관심을 부추기는 것은 국제환경법 및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의 행정당국 및 입법 기관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우려 때문에 나타나는 대응이다.

둘째, 환경문제는 인권 옹호론자, 법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과거에는 정책 입안자의 특권으로 여겨졌음). 환경권은

³⁵⁾ Tarcísio Hardman Reis,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s under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Wolters Kluwer), 2011, p.40.

³⁶⁾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1950년 11월 4일 채택, 1953년 9월 3일 발효.

³⁷⁾ Linda Hajjar Leib, *op. cit.*, p.2.

인권 활동가, 환경론자 및 환경 파괴의 희생자에게 국가책임 부과와 장애물로 종종 거론되는 ‘주권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마련해 주고 있다. 주로 국제법이 국가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형식과 달리, 국제인권법은 개인, 개인들의 집단과 위반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웨스트팔리아 국제법적 전통에서 벗어난 것이다.

셋째, 환경문제와 인권의 접목은 국제법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법 차원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즉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통용되고 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는 환경문제를 인권문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많은 지역적 인권 문서 및 각국 헌법은 환경인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⁸⁾

III.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유형

1. 의의

환경과 관련한 법, 또는 환경에 대한 접근 방법은 크게 4가지 범주, 즉 첫째, 사법(private law), 특히 불법행위법(tort)과 재산법(property law), 둘째, 공법적 규제public regulation(형법을 포함), 셋째, 시장 원리(market mechanisms)를 반영한 접근법, 그리고 넷째, 인권적 접근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³⁹⁾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권적 접근이다. 인권적 접근은 국제인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인권을 존중·촉진·장려함으로써 환경보호에 동원될 수 있다는 담론이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패러다임은 권리 중심적이다. 모든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이에 추가하

³⁸⁾ UNHRC의 ‘인권과 환경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의 2019년 보고서에 의하면, 총 124개국이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들의 당사국이며, 100개국이 헌법에, 100개국 이상이 국내환경입법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최소한 155 개국이 조약이나 헌법, 입법을 통해 법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UNHRC,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ssue of Human Rights Obligations relating to the Enjoyment of a Safe,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A/HRC/40/55, 8 January 2019, paras.7-16).

³⁹⁾ Donald K. Anton and Dinah L. Shelton, *op. cit.*, p.16.

여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보장된 권리의 향유를 위한 전제조건과 연결되어 있는 일정한 환경의 질을 향유할 권리를 강조한다. 애초에 환경에 대한 권리 중심적 접근방법은 사법화에 맞지 않는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후 법원들은 점차로 환경 질에 대한 헌법적 또는 국제법적 권리를 인용하고 있다. 많은 국가의 국내법원들은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허용하는 입장을 확대하였다.⁴⁰⁾ 그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권리 중심적 접근방법은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인권적 접근의 유형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 내지는 논쟁은 기존의 인권을 확장하거나 재해석하는 방식, 절차적 권리에 대한 의존하는 방식, 새로운 환경인권을 개념화하는 방식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여기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에서 나타나는 이론 3가지, 즉 확대이론(expansion theory, 또는 재해석 이론), 환경민주주의이론(environmental democracy theory), 창설이론(genesis theory)을 살펴본다. 앞의 두 이론은 기존의 실체적 인권과 절차적 인권을 환경적 차원에서 확대 재해석·적용하는 방법, 이른바 인권의 녹색화(greening)에 상당하는 이론이고, 반면에 창설이론은 국제법상 새로운 환경인권을 별도로 형성하여 발전시키려는 이론이다.⁴¹⁾ 확대이론과 민주주의 이론은 실체적 환경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그럼에도 이 두 이론은 인권개념을 녹색화하거나 자연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태도를 비꿈으로써 미래의 환경적 권리 승인을 위한 법적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창설이론은 모든 인권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환경적 권리에 근거한 국제법상의 새로운 인권을 만들고자 한다.

(1) 확대이론

확대이론은 생명권, 건강권, 사생활 및 가정생활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이미

⁴⁰⁾ *Ibid.*, p.55.

⁴¹⁾ Linda Hajar Leib, *op. cit.*, p.71.

잘 확립되어 있는 인권을 환경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인권을 녹색화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⁴²⁾ 국제인권조약에 새로운 환경인권을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의 인권법을 녹색화하는 접근방법, 즉 기존의 인권을 환경적 차원에서 재해석 또는 확대해석 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다. 확대이론은 기존의 실제적 인권을 환경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지역적 국제인권기구나 국제인권재판소에서는 주로 이러한 접근방법을 취했다.⁴³⁾ 이들은 인권조항을 진보적(또는 목적론적)으로 해석하여 앞에서 언급한 보편적 권리의 내용 속에 환경적 내용을 조끔씩 때론 파격적으로 포함시켰다. 인권조항의 해석시 인간 건강에 대한 고려는 환경보호와 인권실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⁴⁴⁾

핵심적인 인권조약들⁴⁵⁾ 어느 곳에도 환경적 권리(environmental right)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환경적 차원에서 인권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약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적 권리를 참작하거나 국제인권조약에서 보호된 인권을 확대 해석·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⁴⁶⁾

여기에 해당하는 권리들은 환경적 맥락에서 원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생적 권리(derivative rights)라고도 한다,⁴⁷⁾ 기존 권리의 확장 또는 재해석은 환경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은 환경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장래에 인정할 수 있는 과도기적 단계로 유용하다.

인권과 환경 간의 연계 논의 이전인, 1972년 스톡홀름선언 채택 이전에 채택된

42) Patricia Birnie and Alan E.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2nd ed., Oxford: Oxford Univ. Press, 2002, p. 253; Prue Taylor, *An Ecological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London: Routledge, 1998. p.220.

43) Alan Boyle,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Where Next?", in Ben Boer (ed.), *Environmental Law Dimensions of Human Rights*, Oxford: Oxford Univ. Press, 2015, p.203.

44) Pierre-Marie Dupuy and Jorge E. Viñuales, *op. cit.*, p.363.

45) OHCHR에 따르면, 사회권규약(ICESCR), 자유권규약(ICCP),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고문방지협약(CAT), 아동권리협약(CRC),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ICMW), 장애인권리협약(CRPD), 강제실종협약(CED) 등을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https://www.ohchr.org/EN/HRBodies/Pages/HumanRightsBodies.aspx> (2019년 7월 23일 최종 검색)

46) Alan Boyle, *op. cit.*(supra note 43), p.212.

47) Robin Churchill, "Environmental Rights in Existing Human Rights Treaties," in Alan E. Boyle and Michael R. Anderson(eds.), *Human Rights Approaches to Environment Protec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96, p.90.

인권 문서들은 명시적으로 환경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제인권기구나 국제인권재판소는 기존의 보호된 권리를 환경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인권 문서를 해석했다. 즉 기존의 인권 문서들에 규정되어 있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재산권,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등을 환경적 차원과 연계한 해석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인권과 환경 간의 연계성을 인정하고 있다.⁴⁸⁾

이러한 접근방법은 지역적 국제인권재판소가 환경 관련 사안을 판단할 때 적용했던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원고가 생명권, 건강권 또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등과 환경적 위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기존의 인권으로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기존의 인권으로 생물 종의 보존이나 생태계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셋째, 기존의 인권에 의존하는 것은 새로운 인권의 인정에 필요한 일관성(consistency)의 결여를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인권이 국제 관습법으로 확립되는 것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한다.⁴⁹⁾

(2) 환경민주주의 이론

환경 민주주의 이론은 민주주의 거버넌스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의 영역으로 끌어 들인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 공공문제에 대한 참여권, 권리구제 및 사법 접근권 등과 같은 절차적 권리들은 시민,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환경의사결정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는 절차적 권리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구제를 받을 권리(제8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10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제19조), 참정권 및 투표권(제21조) 등은 세계인권선언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천명되고, 이후 1966년 자유권규약(ICCPR)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제14조), 표현의 자유(제19조), 참정권 및 투표권(제25조) 등을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48) OHCHR Report(2011), para. 26.

49) Linda Hajjar Leib, *op. cit.*, p.158.

많은 국제기구 및 유엔 기구들은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공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채택하였다. 1992년 UNCHE 이후 인권과 환경 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폭넓은 인정은 환경적 절차적 권리의 발전 및 수락승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⁵⁰⁾ 또한 몇몇 국제환경협정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법의 지배)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인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대중 참여 및 사법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⁵¹⁾ 환경문제에 대하여 절차적 민주적 권리를 동원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서 환경민주주의 이론은 환경보호와 민주주의 가치 간의 관계에 필수적이다.

(가) 국제환경문서에 나타난 환경적 절차적 권리

많은 국제환경문서는 환경과 관련한 절차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1982년 세계자연헌장은 “모든 사람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들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자신들의 환경에 피해 또는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는 1987년 Brundtland보고서라고 알려진 *Our Common Future*에서 국가는 적시에 모든 사람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 사법적 절차에 평등한 접근과 적법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⁵²⁾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은 제23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결요건 중 하나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공의 참여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개인, 집단 및 조직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참여,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개발 관련 정보에 대한 개인, 집단 및 조직 등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⁵³⁾

절차적 권리와 환경문제 간의 연계를 구체화한 문서는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이다. 절차적 권리가 환경영역에서 더욱 중요한 권리로 발전되었

⁵⁰⁾ *Ibid.*, p.81.

⁵¹⁾ OHCHR Report(2011), para. 27.

⁵²⁾ WCED, *Our Common Future*, 1987, p.349.

⁵³⁾ UNCED, Agenda 21(1992), Ch.23.

는데, 리우선언 이후 환경과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조약들은 대부분 이러한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⁵⁴⁾ 리우선언 원칙10⁵⁵⁾은 절차적 권리와 환경문제 간의 연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리우선언 원칙10은 환경문제에 대한 참여권,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권, 피해의 구제와 배상 등 사법 및 행정적 절차에 대한 접근권 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⁵⁶⁾⁵⁷⁾

(나) Aarhus협약

환경적 절차적 권리를 가장 잘 명시하고 있는 조약은 1998년 ‘정보에 대한 접근, 의사결정에 공공 참여 및 환경문제에 대한 사법 접근에 관한 협약’, 일명 Aarhus협약이다. Aarhus협약은 절차적 권리와 환경문제 간의 관련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약이다.⁵⁸⁾ 다시 말해서 Aarhus협약은 리우선언 원칙 10에 근거하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 공중의 참여권 및 사법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다.⁵⁹⁾ 동 협약은 의사 결정 과정에 대중 참여의 가치를 부여하고 사법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유용하다.⁶⁰⁾

Aarhus협약 채택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Kofi Annan은 동 협약에 대해 “리우선언 원칙10을 반영하고 있는 가장 인상적인 조약이며, 시민들의 환경문제

⁵⁴⁾ Alan Boyle, *op. cit.*,(supra note 43), p.201.

⁵⁵⁾ 리우선언 원칙10 “환경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모든 관계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진다. 국가차원에서 각 개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유해물질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적절히 접근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각 국가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함으로써 공공 인식 및 참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피해의 구제와 배상 등 사법 및 행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⁵⁶⁾ Alan Boyle, *op. cit.*(supra note 43), p.213.

⁵⁷⁾ 리우선언은 다양한 국제인권조약들에 포함된 인권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인권’(human rights)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Dinah Shelton, “What happened in Rio to Human Rights.”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3, 1992, pp.83-84).

⁵⁸⁾ Linda Hajjar Leib, *op. cit.*, pp.83-86.

⁵⁹⁾ Gupta Aarti, “Transparency under Scrutiny: Information Disclosure in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Vol.8 (2), 2008, pp.1-7.

⁶⁰⁾ Vera Rodenhoff, “The Aarhus Conven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y,”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11 (3), 2002, pp. 343-357.

에 대한 참여와 공공 당국이 보유한 환경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민주주의 분야에서 UN의 후원하에 지금까지 착수한 가장 야심 찬 모험이다”라고 평가하였다.⁶¹⁾

환경 문제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고 있는 Aarhus협약의 특성은 ICCPR 및 다른 인권조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존의 참여권을 환경법 분야에서 채택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Aarhus협약은 시민과 NGO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국제 경협약이다. 이러한 의무를 수립함으로써 Aarhus협약은 국제인권시스템과 ‘긴밀한 친화력’을 보여주고 있다.⁶²⁾

Aarhus협약에 구체화된 환경적 절차적 권리는 종종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 환경의사결정절차에의 참여권, 사법접근권이라는 ‘세 기둥’(three pillars)으로 묘사되기도 한다.⁶³⁾ 정보접근권은 모든 시민이 환경 정보에 폭넓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공공 당국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적시에 투명한 방식으로 수집 및 배포해야 한다.⁶⁴⁾ 의사결정에 대한 공중의 참여권은 공중이 모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의사결정 및 입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⁶⁵⁾ 사법 접근권은 당사국이 환경법 및 협약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공중이 가지는 사법 또는 행정적 청구 절차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⁶⁶⁾⁶⁷⁾ 그리고 Aarhus협약은 적절한

61) “Aarhus Convention,” https://en.wikipedia.org/wiki/Aarhus_Convention, (2019년 7월 25일 최종 검색); UNECE, Aarhus Convention: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to Environmental Matters, <http://www.unece.org/env/pp/> (2019년 7월 25일 최종 검색).

62) Marc Pallemarts, “Introductio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Dejeant-Pons Maguelonne and Marc Pallemarts(eds.),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2, p.18.

63) Ellen Hey,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n the European ‘Aarhus Space,’” in Anna Grear and Louis J. Kotzé, *Research Handbook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Cheltenham: Edward Elgar, 2015, p.355; 김현준, “환경司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환경법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137면.

64) Vera Rodenhoff, *op. cit.*, p.345.

65) *Ibid.*, p.346.

66) *Ibid.*, p.348.

67) Aarhus협약 이외에도 몇몇 다자간환경협정 중에는 정보접근권, 참여권, 권리침해 구제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협약은 당사국에게 국내적 차원 및 소지역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국내법에 따라 각자의 능력 안에서 정보에의 공공 접근, 공공 참여를 촉진하고 장려하

환경을 향유할 권리(right to an adequate environment)를 인정하고 있다(제1조와 전문).

(3) 창설이론 genesis theory

창설(생성, 창조)이론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기존의 인권과는 별도로 새로운 인권을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확대이론/재해석이론과는 달리 새로운 환경인권의 주장자들은 기존의 인권(환경피해에 대한 대처에는 유용하지만)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효과도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⁶⁸⁾ 그러므로 실제적 환경권의 창설은 기존의 인권을 원용할 필요 없이 환경적 권리의 보유자가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보통 원고는 환경피해와 기존 인권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라는 요청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청구인이 과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특정한 환경오염이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 사건은 기각될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 환경사고와 개인적 피해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요건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적 권리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신에 원고는 특정한 환경기준이 위반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Leib는 창설이론은 Rich가 발전권의 기원에 대한 분석에서 확인한 ‘필수불가결 이론’(indispensability theory)⁶⁹⁾과 들어맞는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 목표 또는 환경보호를 위해 기본적인 인권의 희생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발전권은 기본적인 인권의 향유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발전이 성취될 때까지 많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줄 수 있다고 Rich는 주장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Rich의 이론적 근거를 적용함으로써, 발전권과 마찬가지로 환경인권은 기본적인 인권의 실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⁷⁰⁾

도록 하고 있다(기후변화협약 제6조(a)).

⁶⁸⁾ Linda Hajjar Leib, *op. cit.*, p.88.

⁶⁹⁾ Ronald Rich, “The Right to Development as an Emerging Human Right,”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3, 1982~1983, p.320.

⁷⁰⁾ Linda Hajjar Leib, *op. cit.*, p.88.

3. 환경보호 위한 국제인권법의 활용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이후 체결된 국제인권조약 중에는 인권과 환경의 연계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989년에 체결된 아동권리협약⁷¹⁾은 환경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 제24조 제2항 (c)은 국가에게 환경오염의 위험(dangers)과 리스크를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81년의 아프리카인권헌장⁷²⁾과 1988년에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분야에서서의 인권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⁷³⁾, 2004년의 아랍인권헌장⁷⁴⁾ 등과 같은 지역적 인권조약들은 환경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⁷⁵⁾

7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채택, 1990년 9월 2일 발효.

72)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981년 6월 27일 채택, 1986년 10월 21일 발효. 동 헌장은 제24조에서 ‘모든 인민은 자신의 발전(development)에 우호적인(favorable) 일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환경(satisfactory environment)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4조와 관련하여 또 유념해 볼 사항은 만족할 만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발전(development)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Robin Churchill, “Environmental Rights In Existing Human Rights Treaties,” in *Human Rights Approaches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lan E. Boyle and Michael R. Anderson (eds.), Oxford: Clarendon Press, 1998. p.106).

73)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Protocol of San Salvador), 1988년 11월 17일 채택, 1997년 12월 23일 발효. 동 의정서는 제11조에서 ‘모든 사람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환경의 보호, 보존 그리고 개선을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4) The Arab Charter on Human Rights, 2004년 5월 22일 채택, 2008년 3월 16일 발효. 동 헌장은 제38조에서 안녕과 알맞은 삶을 보장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의 일부로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75) 인권과 환경의 연계가 반영된 인권이 이른바 제3세대 인권(third generation of human rights)이다. 제3세대 인권은 보통 연대권(solidarity rights)이라고도 한다. 아직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제3세계 민족주의의 등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제3세대 인권은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를 요구하며, 현재의 국제체제는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효적이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그 범위(dimension)가 본질적으로 집단적이라는 것이고 이들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박병도, “제3세대 인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0집,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6, 1-6면 참조). 제3세대 인권 개념은 여전히 형성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Weston은 제3세대 인권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the right to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and benefit from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이러한 조약들을 검토해 보면, 인권과 환경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 하면서 양자를 접목하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강화는 인권 및 건강한 환경의 향유에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인권과 건강한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성의 특정한 측면이 강화되고 더 명확화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자간환경협정의 협상과 이행과정에서 어떻게 인권적 접근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해명이 필요하다.⁷⁶⁾

IV.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1. 의의

환경과 인권 간의 연계 논의는 국제인권기구와 국제인권재판소에 의해 제기된 환경과 관련한 인권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국제법 이론 및 판례의 발전에 설득력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인권기구들은 환경과 관련한 사례에서 기존의 인권 규정을 적용하였다. 판례들을 살펴보면, 생명권, 건강권, 사생활 및 가정생활에 대한 권리, 공공 참여권, 정보 접근권 등이 환경적 차원에서 원용되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right to safe and healthy environment)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인권조약들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생명권, 건강권, 식량권, 물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은 권리들이 환경의 질적 저하 상태에서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⁷⁷⁾

아프리카, 유럽 및 미주의 인권체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환경문제와 관련한 인권 법리는 환경악화가 어떻게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하는데 기여했다.⁷⁸⁾ 여기서는 선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본다.

the right to peace, the right to health environment, the right to humanitarian relief(Burn H. Weston,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Vol.6, 1986, p.266)

⁷⁶⁾ OHCHR Report(2011), para. 28.

⁷⁷⁾ Philipp Aerni, Bertram Boie, Thomas Cottier, Kateryna Holzer, Dannie Jost, Baris Karapinar,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Exploring the Linkages Between Human Rights, Environment, Trade and Investment," *Germany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53, 2010, p.153.

유럽인권재판소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다루면서 인권과 환경을 연계하는 법리를 발전시켰다. 특히 환경오염과 관련한 사건에서 인권과 환경 관계를 밝히는 데 기여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주로 환경문제와 유럽인권협약에서 보호되고 있는 권리(예를 들면, 생명권, 건강권, 사생활 및 가정생활에 대한 권리, 재산권 등)를 연계하여 판단을 내렸다. 환경오염이 여러 보호된 권리, 특히 생명권과 사생활 및 가정생활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방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⁷⁹⁾ 또한 국가가 환경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제, 감시 및 집행, 그리고 환경위험에 관해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하여 환경위험을 알리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⁸⁰⁾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과 환경문제의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환경 민주주의(environmental democracy)라는 개념에 고무되어왔다. 재판소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적극적인 의무는 사회의 공동 이익에 균형을 맞추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판단의 재량(margin of appreciation)⁸¹⁾을 향유한다. 그러나 이 판단의 재량은 보호된 권리에 대한 어떤 간섭의 비례성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비례성의 결정 과정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정보에 대한 접근, 의사 결정 참여 능력, 정부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 요청 가능성 등과 같은 환경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societal dialogue)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 법과 절차적 보중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⁸²⁾

2. 주요 판례분석

유럽인권협약은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78) OHCHR Report(2011), paras. 34-40.

79) 예를 들면, *Fredin v. Sweden*, application No. 12033/86 (1991); *López Ostra v. Spain*, App. No. 16798/90 (1994); *Öneriyildiz v. Turkey*, application No. 48939/99 (2004); *Fadeyeva v. Russia*, App. No. 55723/00 (2005).

80) OHCHR Report(2011), para. 37.

81) 유럽인권협약 해석에 있어서 판단의 재량(margin of appreciation)에 대해서는 정경수,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 유럽인권협약 해석의 판단여지를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통권 제29호, 2009, 158-171면 참조.

82) OHCHR Report(2011), para. 38.

환경오염 또는 산업활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적 배상청구의 근거로 협약상의 여러 조항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 대표적인 2개의 조항이다. 하나는 제2조의 생명권(the right to life)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8조의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the right to respect for a private and family life and home)이다. 대부분의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생명권은 인간의 ‘최고의 권리’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⁸³⁾ 유럽인권협약 제2조 1항은 생명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법에 규정된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의 유죄확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또한 자신의 생명을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최소한의 환경입법을 요구한다.⁸⁴⁾

유럽인권재판소는 위험한 산업활동으로 인한 피해사례⁸⁵⁾, 자연재난과 관련된 사례⁸⁶⁾에서 제2조 위반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는 원고 측의 주장과는 달리 제2조 위반이 아니거나 허용될 수 없는 청구라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면, *Guerra and Others v. Italy* 사건⁸⁷⁾에서 원고는 제2조 위반을 주장했으나 제2조에 대한 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⁸⁸⁾ 원고들은 많은 양의 가연성 가스(inflammable gas)를 배출하는 화학비료공장에서부터 1km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다. 원고들은 그 가스가 고농도의 유독물질을 방출하는 화학반응을 야기할 수 있고 문제의 화학공장은 EC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제8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공익과 사생활 존중과 관련 있는 사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다시 말해서, 재판소는 환경오염이 제8조에 규정된 권리에 영향을

83) 유럽인권협약 제15조 제2항, 자유권규약 제4조, 미주인권협약 제27조 제2항은 비상사태 하에서도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는 권리, 즉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84) E.M.K. Uhlmann, “State Community Interest, *Jus Cogens* and Protection of Global Environment: Developing Criteria for Peremptory Norms,” *Georgetow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view*, Vol.11, 1998, p.118.

85) *Öneryıldız v. Turkey*, 30 November 2004 (Grand Chamber)

86)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 March 2008 ; *Özel and Others v. Turkey*, 17 November 2015.

87) *Guerra and Others v. Italy*, Appl. No. 14967/89, ECtHR, Judgement of 19 February 1998.

88) Alan Boyle, *op. cit.*, (supra note 28), p.141.

주는 한 이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수리가가능한(admissible) 것으로 받아들였다.⁸⁹⁾ 그리고 제8조를 해석하면서 사생활의 존중과 공적 개입(public interference) 사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태도를 나타냈다.⁹⁰⁾

협약 제8조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은 *The Lopez Ostra v. Spain* 사건⁹¹⁾이다. 1988년 Sacursa라는 회사가 Lopez Ostra의 집으로부터 12미터 떨어진 곳에 액체 및 고체폐기물처리시설이 건설하였다. 그 공장은 시(市) 토지 위에 정부 교부금으로 건축되었음에도 Sacursa는 생활방해(nuisance)를 야기할 수 있고 건강을 해치고 유독하며 위험한 것으로 분류된 활동에 필요한 면허를 얻지 않았다. 이 공장은 유독가스, 악취 및 오물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소음문제도 유발하여 지역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었다. 공장으로부터 뿜어 나오는 가스, 해로운 냄새와 오탁물질은 지역의 대기를 오염시켰고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 특히 Ostra의 집(아파트)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의 문제와 생활방해를 야기하였다. 1988년 시(市)위원회는 새로운 곳에 Ostra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새 주택을 공급하였다. 1992년 10월 Ostra와 그 가족은 자발적으로 오래된 옛날 아파트로 돌아와 1992년 말까지 거기서 살았다. 유럽인권위원회에 개인통보⁹²⁾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여야하기 때문에⁹³⁾ 이러한 구제절차를 완료한 이후 (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어감) Ostra는 협약 제3조⁹⁴⁾ 및 제8조⁹⁵⁾의 침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인권위원회에 개인통보를 제출하였

⁸⁹⁾ M. Wilde, "Locus Standi in Environmental Torts and Potential Influence of Human Rights,"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12. no.3, 2003, p. 290.

⁹⁰⁾ Tarcísio Hardman Reis, *op. cit.*, p.41.

⁹¹⁾ *Lopez Ostra v. Spain*, Appl. No. 16798/90, ECtHR, Judgement of 9 December 1994.

⁹²⁾ 오늘날 주요 핵심 국제인권조약들은 해당 인권조약기구가 개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구제 청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즉 개인통보제도를 마련하고 있다(정인섭, 「신국제법강의」(제9판), 박영사, 2019, 920면).

⁹³⁾ 인권조약 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개인이 인권조약기구에 바로 통보를 제출할 수는 없다. 피해자 개인은 우선 침해가 발생한 국가에서 인정되는 절차를 모두 밟고, 그럼에도 권리침해가 구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이를 국내적 구제완료원칙이라고 한다(정인섭, 위의책, 932-933면).

⁹⁴⁾ 유럽인권협약 제3조(고문의 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⁹⁵⁾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제1항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⁹⁶⁾ 이에 유럽인권위원회는 Ostra의 통보를 허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협약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은 발견할 수 없고 제8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⁹⁷⁾ 이어서 Ostra는 사생활 및 평화로운 주거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당연히, 심각한 환경오염은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안녕(well-being)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거생활을 방해할 수 있으며, 사생활 및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⁹⁸⁾ 판결내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협약 제3조상의 신체보전권(right to physical integrity)이 아니라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존중을 향유할 권리에 근거하여 권리 침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은 전형적인 생활방해가 특정한 인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 자체가 생활방해를 야기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원고가 자신의 소장에서 인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⁹⁹⁾ 그리고 이 사건은 소구가 가능한(actionable)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전통적인 자유권과 일반적으로 소구불가능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 사회권(social rights)과의 차이점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Ostra사건은 전통적인 인권, 즉 자유권과 사회권 간의 융합을 낳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1990년 *Powell & Rayner v. UK* 사건¹⁰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공항의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및 가정생활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였다. Rayner는 Heathrow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의 수준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권리(privacy right), 즉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right to respect for one's private life)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 조항으로 협약 제8조를 제시하였다.¹⁰¹⁾ 유럽인권위원회는 통보의 수리가능성(admissibility)에 관한 결정

⁹⁶⁾ Richard Desgagné, “Integr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9, 1995, p.270.

⁹⁷⁾ *Ibid.*, pp.270-271.

⁹⁸⁾ Lopez Ostra v. Spain, *op. cit.*, para.58 and 60; Dominic McGoldrick, *op. cit.*, pp.816-818.

⁹⁹⁾ M. Wilde, *op. cit.*, p. 290.

¹⁰⁰⁾ ECHR, *Powell & Rayner v. UK*(1990) 3 EHRR 355. [http://hudoc.echr.coe.int/eng/?i=001-57622\(2019년 7월 25일 최종 검색\)](http://hudoc.echr.coe.int/eng/?i=001-57622(2019년 7월 25일 최종 검색)).

¹⁰¹⁾ Richard Desgagné, *op. cit.*, p.273.

에서, 협약 제8조는 가정에 대하여 취해지는 직접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사인에게 가해지는 조치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간접적인 방해(indirect intrusion)도 포함한다’라고 견해를 밝히면서, Heathrow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야기된 피해는 협약 제8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럽인권위원회는 Heathrow공항의 활주로는 국가의 경제적 복지(economic well-being)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제8조 2항¹⁰²⁾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관련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자들이 ‘실질적인 어려움과 손실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담은 유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Rayner사건은 이러한 이주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8조에 근거한 통보는 명백하게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허용 불가능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¹⁰³⁾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자 Rayner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재판소는 Rayner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8조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에 대해서 심리하였고, 그 결론은 제8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명백하게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제8조는 대립하는 개인의 이익과 전체로써 공동체 이익 사이에 공정한 균형(fair balance)이 형성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견해를 내놓으면서 이 사례의 경우 그 균형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보았다.¹⁰⁴⁾ 즉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전체로서 공동체의 이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¹⁰⁵⁾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와 빈도는 제8조 제2항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¹⁰⁶⁾ 여기서 유의하여 볼 점은, 제8조 2항에 의해 정당화가 된다고 판단하였지만 유럽

102) 유럽인권협약 제8조 2항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지,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103) Rayner v. United Kingdom, Application 9310/81, Decisions and Reports of the Europe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Vol.47, 1986, pp.12-14.

104) Powell and Rayner v. United Kingdom, ECHR Ser. A., No.172(1990), pp.18-20.

105) S. Douglas-Scott, “Environmental Rights in The European Union,” in *Human Rights Approaches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lan E. Boyle and Michael R. Anderson (eds.), Oxford: Clarendon Press, 1998. p.111.

106) Richard Desgagné, *op. cit.*, p.275.

인권재판소는 항공기 소음이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들은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들을 환경적 차원에서 해석하는데 기여했다. 즉 위에서 소개한 판례들은 유럽인권협약의 확대해석을 통하여 전통적 인권 내용 속에 환경적 요소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비롯한 환경문제와 관련한 판결들은 환경정책이나 환경위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개인과 공동체의 보호와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국가의무를 확대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¹⁰⁷⁾

V. 맺는 말: 인권적 접근의 한계와 전망

1972년 UNCHE 이후 인권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 각국,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스톡홀름선언에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이후 여러 인권 문서들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환경 문서들은 인간 건강과 환경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상당한 수의 국가가 환경권을 자국의 헌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동안 인권 메커니즘은 인권과 환경 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유엔현장기구들은 국가와 국제기구에 지침을 제공하는 결의의 채택을 통해 인권과 환경 간의 연계성의 특정 요소를 밝히는데 기여했다. UNHRC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가 인간의 안녕과 인권의 향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환경피해가 인권의 효과적인 향유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적 국제인권기구와 국제인권재판소는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등을 해당 조약에서 보호되고 있는 권리의 환경적 차원을 고려하여 해석하고 판단하였다.

인권과 환경 사이의 복잡하고 다각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긴다. 지구적 환경악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을 어떻게 꾸러낼 것인가? 대부분의 국제인권조약은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¹⁰⁷⁾ OHCHR Report(2011), para. 40.

있지 않다. 국제인권기구나 국제인권재판소는 생명권이나 건강권 등 일반적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을 통하여 환경보호 규범을 도출해왔다.¹⁰⁸⁾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환경권을 명확하게 신설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권이 환경보호의 수단으로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¹⁰⁹⁾이다.¹¹⁰⁾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특히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의 구체적 성격과 내용 등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인권이사회가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지금의 작업에 비중을 더 두어 인권과 환경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에 관련한 또 다른 과제는 다자간 환경협정의 협상 및 이행과정에서 인권적 접근법을 어떻게 적용 또는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적절한 답을 내놓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 및 국제적 환경 관련 정책과 법에 기존의 인권뿐만 아니라 새롭게 논의되는 변화하는 인권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국가는 환경악화의 악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 관련 법과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서 인권적 접근법을 수용하고, 환경정책을 인권 프로그램과 접목시켜야 한다. 인권적 접근법에 따른 환경 관련 법과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은 환경악화로부터 인권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환경 관련 법과 정책이 인권기준을 접목시키는 데에 인권 교육 및 훈련이 기여할 수 있다. 환경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효과적이고 공정한 인권 실현을 달성하는데 인권 교육 및 훈련이

108) 이러한 해석도 주로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지역적 기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역적 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의 표현이 국제인권조약들에서도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권리에 대한 지역적 기구의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인권협약에도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Siobhan McInerney-Lankford, Mac Darrow and Lavanya Rajamani,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 A Review of the International Legal Dimensions*, World Bank Study, The World Bank, 2011, p.29).

109) human right to ‘healthy’ environment 라는 표현에서 ‘healthy’라는 용어 대신에 ‘clean’나 ‘healthful’ 또는 ‘sound’ 또는 ‘decent’라는 용어로 대체하거나 병행해서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110) Prue Taylor, *An Ecological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London: Routledge, 1998. p.193 이하.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인권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인간중심적 사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 인권은 인간 중심적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인권법상 생명권은 일반적으로 생태적 관점으로부터 모든 생명체(life forms)를 그 주체로 보지 않는다. 국제환경법도 생태중심적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인간중심적이다.¹¹¹⁾ 다양한 인권 관련 이론의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기본적으로 생태계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¹¹²⁾ 일찍이 Stone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권 개념은 본질적으로 인간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¹¹³⁾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도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전하는 목적도 주로 인간 중심의 필요와 욕망에 있다. 이와 같이 인권적 접근은 인간중심적이어서 환경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인간도 단지 지구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인자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환경을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환경의 고유한 가치가 인간의 이익에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21세기 인권은 시대적 진화와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논문투고일 : 2019. 8. 10. 심사일 : 2019. 8. 16. 게재확정일 : 2019. 8. 26.

¹¹¹⁾ Alan Boyle, *op cit.*(supra note 28), p.141.

¹¹²⁾ Taylor는 이러한 상황을 ‘생태적 문맹’(ecological blindness)이라고 언급한다(Prudence E Taylor, “From Environmental to Ecological Human Rights: A New Dynamic in International Law,” *Georgetow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view*, Vol.10, 1998, p.313).

¹¹³⁾ C.D. Stone, “Should Trees have Standing? 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 *South California Law Review*, Vol.45, 1971, p.450.

참고문헌

- 김현준, “환경司法 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환경법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 박병도,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의 통합적 구조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3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1998.
- 정경수,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 유럽인권협약 해석의 판단여지를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통권 제29호, 2009.
-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제9판), 박영사, 2019.
- Aarti, Gupta, “Transparency under Scrutiny: Information Disclosure in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Vol.8 (2), 2008.
- Aerni, Philipp and Bertram Boie, Thomas Cottier, Kateryna Holzer, Dannie Jost, Baris Karapinar,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Exploring the Linkages Between Human Rights, Environment, Trade and Investment,” *Germany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53, 2010.
- Alfredsson, Gudmundur,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n David Leary and Balakrishna Pisupati (eds.), *The Futur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10.
- Anton, Donald K. and Dinah L. Shelt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Human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Birnie, Patricia and Alan E.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2nd ed., Oxford: Oxford Univ. Press, 2002,
- Boyle, Ala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Where Next?” in Ben Boer (ed.), *Environmental Law Dimensions of Human Rights*, Oxford: Oxford Univ. Press, 2015.
- Boyle, Alan,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Other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 in Bodansky, Daniel, Jutta Brunnēe and

- Ellen Hey(eds.),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Churchill, Robin, “Environmental Rights in Existing Human Rights Treaties,” in Alan E. Boyle and Michael R. Anderson(eds.), *Human Rights Approaches to Environment Protec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98.
- Desgagné, Richard, “Integr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9, 1995.
- Douglas-Scott, S., “Environmental Rights in The European Union,” in *Human Rights Approaches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lan E. Boyle and Michael R. Anderson (eds.), Oxford: Clarendon Press, 1998.
- Dupuy, Pierre-Marie and Jorge E. Viñual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 Hey, Ellen, *Advanced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ELgar, 2016.
- Hey, Ellen,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n the European ‘Aarhus Space’,” in Anna Grear and Louis J. Kotzé, *Research Handbook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Cheltenham: Edward Elgar, 2015.
- Linda Hajjar Leib,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Philosophical, Theoretical and Legal Perspectiv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 McGoldrick, Dominic,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45, 1996.
- McInerney-Lankford, Siobhan and Mac Darrow and Lavanya Rajamani,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 A Review of the International Legal Dimensions*, World Bank Study, The World Bank, 2011.
- Orellana, Marcos A.,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Climate Change,” in José Parra(ed.),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A Field of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Geneva: Cifedhop, 2012.

- Pallemaerts, Marc, "Introductio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Dejeant-Pons Maguelonne and Marc Pallemaerts(eds.),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2.
- Reis, Tarcisio Hardman,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s under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Wolters Kluwer), 2011.
- Rich, Ronald, "The Right to Development as an Emerging Human Right,"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3, 1982~1983.
- Rodenhoff, Vera, "The Aarhus Conven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y,"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11 (3), 2002.
- Shelton, Dinah, "What happened in Rio to Human Rights."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3, 1992.
- Stone, C. D., "Should Trees have Standing? 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 *South California Law Review*, Vol.45, 1971.
- Taylor, Prue, *An Ecological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London: Routledge, 1998.
- Taylor, Prudence E., "From Environmental to Ecological Human Rights: A New Dynamic in International Law," *Georgetow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view*, Vol.10, 1998.
- Wilde, M., "Locus Standi in Environmental Torts and Potential Influence of Human Rights,"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12. no.3, 2003.
- UNHRC, *Analyt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 Doc. A/HRC/19/34(16 December 2011).
- UNHRC,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ssue of Human Rights Obligations relating to the Enjoyment of a Safe,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 A/HRC/40/55, 8 January 2019.
- WCED, *Our Common Future*, 1987.

【Abstract】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Park, Byung Do

(Professor, School of Law, Konkuk University)

Recently, the conside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s becoming more active.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First, human rights can work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is implies a temporary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human rights claims. Conversely, humans rely on a clean and healthy environment to enjoy their basic human rights. Environmental degradation can affect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Environmental degradation, including pollution of air, water and land can affect the realization of particular rights, such as the rights to life, food and health.

This article discusses the theoretical issues that ari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and analyzes the precedents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there are three major approaches to explaining this. The first approach submits that human rights are tools to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both procedurally and substantively. This approach emphasizes the possibility of using human rights to achieve adequate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second approach postulates that the environment is a precondition to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The third approach proposes the integ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under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is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human rights is a synergy. The commonality of the three approaches discussed above is that they 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from a synergistic perspec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re mutually reinforcing.

This paper also examines three theories of human rights approach to environmental issues: expansion theory(or reinterpretation theory), environmental democracy theory, and genesis theory. And I analyze the case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pollution or environmental damage.

The conclusion concludes with the limitations and prospects of a human rights approach.

주 제 어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 확대이론(또는 재해석이론), 창설이론, 환경민주주의이론, 유럽인권재판소,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Key Words human rights approach to environmental protection, expansion theory, environmental democracy theory, genesis theory,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right to respect for a private and family life and home